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

제정 2019. 11. 15 조례 제3155호 일부개정 2021. 5. 13 조례 제3317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미세먼지·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환경 개선과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경관향상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건축물"이란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.
 - 2. "옥상녹화"란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또는 벽면에 수목·초화류·잔디 등 식물을 식재하고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.
 - 3. "옥상유효면적"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면적에서 승강기탑, 계단탑, 장식탑, 물탱크, 냉각탑,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.
 - 4. "관리책임자"란 옥상조경을 설치한 건축주(소유자 포함) 또는 관리주체를 말하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안양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옥상녹화 지원은 「건축법」제42조 등에 규정하는 법적의무조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제4조(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) 안양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옥상녹화 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5. 13>
- 제5조(보조금 지원) ① 시장은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, 법인·단체, 개인 등에 옥상녹화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며,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21. 5. 13>
- 제6조(지원 대상 건축물)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녹화가능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민간 건축물로 한다. 다만, 주

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[전문개정 2021. 5. 13]

- 제7조(옥상녹화 기준) ① 옥상녹화사업의 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 정 2021. 5. 13>
 - 1. 옥상유효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: 30제곱미터 이상
 - 2. 옥상유효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: 옥상유효면적의 100분의 30 이 상(최소면적은 20제곱미터로 한다)
 - ②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에는 옥상유효면적, 각종 설비나 유지·관리조건, 이용 목적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옥상녹화사업면적의 80%이상(잔디면적은 100분의 50미만)을 식재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 - ③ 옥상녹화 식재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「조경기준」및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2 544호「건축물 녹화 설계기준」에 따른다.
- 제8조(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) 옥상녹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 및 사업 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9조(옥상녹화 지원 대상 선정)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참여 신청 및 사업 계획서를 기초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「안양시 건축 조례」제12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건축계획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. 다만, 시장은 파급효과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다.
 - ② 건축계획 전문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순위(각 호의 선 순번을 우선한다)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. <신설 2021. 5. 13>
 - 1. 병원, 복지·문화 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
 - 2. 어린이집, 유치원 등의 환경체험 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
 - 3.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·업무용 건축물
 - 4. 제1호에서 제3호 이외의 건축물
 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여부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 정 2021. 5. 13>
- 제10조(협약 체결) 시장은 지원 대상 건축물 관리책임자와 별지 제3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(추 1) - 4322 -

- 제11조(보조금 교부) ①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옥상녹화사업이 완료된 현장을 확인하여, 사업 계획서대로 이행된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한다. 다만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게는 사업 완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 -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「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12조(관리책임자의 보고 의무)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 옥상녹화사업을 폐지한 경우
 - 2. 관리책임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
 - 3. 옥상녹화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
 - 4.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
- 제13조(유지·관리)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관수, 제초, 병해충 방제, 고사목 처리 등 사후 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옥상녹화의 장려) ① 시장은 옥상녹화를 장려하고, 시민 및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옥상녹화 사례를 선정하여 「안양 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축주 등에게 옥상녹화사업을 권장할 수 있다.
- 제15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옥상녹화에 관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 고시「조경기준」을 준용한다.
- 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. 5. 13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5. 13 조례 제331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1. 5. 13>

(4면 중 제1면)

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 및 사업계획서

○ 신청자(관리책임자)

성명	(대표자)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성별
		전화/팩스	
주소		핸드폰	
		e-mail	
자산	억원	부채	억원

○ 사업개요

건물명	준	·공년도		건축주		
주 소						
건물규모	연면적: m²,	옥상면적	m²,	층수(지상	·/지하) :	
사업신청 면 적		m²	옥상에 조성된 기존 녹지면적			m²
총사업비	원	(자부	담: 원,	시지원		원)
구조안전 진단실시	자비로 기 실시() 지원대상지로 선정 시		느실시 예정()		
사 업 참여목적						
건축주의 기대사항						

(추 1) - 4324 -

(4면 중 제2면)

○ 옥상조경 세부계획

공 종	옥상조경세부시설		소요금액 (단위:천원)	산출근거	비고
	합	계			
방수공사	옥기	상바닥 방수			
배수공사	배	수시설설치			
		소 계			
	인공	지반(토양층) 설치			
O 사노회		초 화 류			
옥상녹화	식재	지피식물			
		관 목			
		교 목			
		기 타			
		소 계			
		가 고 라			
	반	<u></u> 치			
	7	성자(亭子)			
조경시설	혼	· 경조형물			
	보	. 행 통 로			
	そ	당 원 석			
	분수	· 연못 · 수로			
	등	· 수경시설			

○ 건물현황

현재 건물 급 상주·이용	11/3		옥상녹화 후 기대 이용인원		명/일
현재 이용	계층		조성 후 이용계층		
건물 층별					
이용현황					
건 물	- 건	물 용도변경 여부	: ○ , X (변경	내용 :)
변경사항	- 리	모델링 및 증축 여부	: ○ , X (변경	내용 :)
현재 옥상	- 개	방여부 (○ , X). 기	배방시간 :		
이용현황	- 주	요 이용자 계층 : 직원	□, 방문객 □,	지역주민 🗆.	기타 🗌
관련도서	- 보	유 준공도서 : 설계도덕	면□, 구조도면□], 구조계산서[], 기타□
보유여부	- 구	조안전진단 보고서 : (○ , X (진단시기]: 년	월)

(4면 중 제3면)

0	옥상녹화	조성	후	활용	계획	
---	------	----	---	----	----	--

이 용 자	- 직원 □, 방문객 □, 지역주민 □. 기타 □
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위한 노력사항	
옥상녹화·구역이 조성된 건물임을 홍보하는 방법	

○ 옥상녹화 조성 후 관리 계획

유지관리	- 횟 수: 월 회
	- 관리방법 : 전문업체 위탁관리□, 건축주 직접관리 □, 기타 □
	- 책정예산 :
개방여부	- 개방방법 : 상시개방□, 주말개방 □, 평일개방 □, 개방불가 □, 기타 □
	- 개방시간:

- * □ 해당란에 √ 표시
- * 구비서류: 위치도 및 현황 사진(별지 제2호서식), 옥상녹화 계획도, 기존 건축 물 설계도면,

20 년 월 일

신청자(관리책임자): 서명 또는 날인

안양시장 귀하

(추 1) - 4326 -

(4면 중 제4면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안양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, 제22조에 의거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 - O 안양시는 다음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
 - 옥상녹화 선정 대상자 관리
 - O 안양시는 법률상 의무이행을 제외하고는 수집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 - 필수항목: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전자우편
 - O 선택항목: -
- 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 - 개인정보는 귀하께서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보유하며, 해당 개인정보는 옥상녹화사업 완료 후 관련 법규에 의거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됩니다.
 - O 타 법령상 의무이행, 민원처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초과하여 보유·이용될 수 있습니다.
- 4. 동의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
 -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 시에는 옥상녹화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필수항목	동의함		동의하지 않음	
------	-----	--	---------	--

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.

년월일신청인(서명)

안양시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위치도 및 현황 사진

□ 대상지 위치도
□ 대상지(옥상) 현황사진

(추 1) - 4328 -

[별지 제3호서식]

○○건물(건물명) 옥상녹화사업 협약서

○○건물(기관) 관리책임자를 "사업시행자"라 하고, 보조금 지원자를 "안양시장" 으로 하여 다음의 협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.

- 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"사업시행자"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본 협약으로 정하는 옥상녹화사업 구역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 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의무) "사업시행자"와 "안양시장"은 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- 제3조(협약의 명칭) 본 협약은 ○○○(건물명) 옥상녹화사업 협약이라 한다.
- 제4조(대상지역) 본 협약의 옥상녹화사업 구역은 안양시의 옥상녹화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조성하는 ○○구 ○○로 ○○, ○○(세부주소 기재) ○○(기관명 또는 건물명)의 옥상녹화사업 구역으로 한다.
- 제5조(협약 기간) 본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 후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으로 정한다.
- 제6조(권리에 관한 사항) 본 옥상녹화사업 구역에 식재된 식물 및 시설물에 대한 권리는 사업비 부담 비율에 따라 협약 기간 동안 "사업시행자"와 "안양시장"이 공동으로 가진다.
- 제7조(녹화에 관한 사항)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옥상녹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, "사업시행자"는 옥상녹화사업이 원활히 추 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 - 1. "사업시행자"는 옥상녹화사업 구역에 인공식재기반(토양층 등)을 새롭게 조성하고 식물을 식재하며, 기타 필요한 조경 시설물 등을 설치한다.
 - 2. "안양시장"은 "사업시행자"가 시행하는 녹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 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.
- 제8조(녹화관리에 관한 사항) "사업시행자"는 식재된 식물 및 설치된 시설물에

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1. 식재한 식물이 지역의 환경보전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 하여 함부로 훼손하거나 벌채하여서는 안 된다.
- 2. 향후 재건축 및 건축물의 증축·개축·대수선이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 시에는 식재된 식물을 최대한 존치하거나 이식하고, 훼손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이나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. 보식하는 경우의 유예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
- 3. 낙엽이나 쓰레기가 배수구를 막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
- 4. 누수의 우려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.
- 5. 강우량이 적은 시기에는 적절한 관수를 실시하고, 토양 양분이 필요한 경 우에는 거름을 준다.
- 6. 이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초 및 전정을 실시하고, 병충해를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제초제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병충해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.
- 7. 안전난간 등 설치된 시설물의 안전성을 수시로 점검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조치한다.
- 8. 옥상녹화사업 후 식물생육 현황, 유지관리 상태, 생태 조사 등을 위해 실시 하는 안양시 모니터링 활동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- 9. 옥상녹화사업의 홍보와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옥상녹화사업 구역을 시민에게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.
- 10. 안양시의 지원으로 옥상녹화를 조성하였음을 알리는 옥외 안내판을 협약 기간 동안 건물 1층 외부 출입구에 설치·유지한다.
- 제9조(협약 내용의 변경 및 해지)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"사업시행자"와 "안양시장"이 협의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을 해지한다.
- 제10조(건축물 소유권 양도 등) ① 건축물 소유권의 양도 등으로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협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건축물 관리책임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.
 - ② 소유권을 양도한 "사업시행자"는 새로운 건축물 관리책임자에게 협약 내용을 인계하고, 이 협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제11조(협약 위반시의 조치) ①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"안

(추 1)

양시장"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협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협약 위반에 대하여 자체적인 해결이 불 가능하거나 협약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 "안양시 장"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, "사업시행자"는 안양시장이 지원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"사업시행자"와 "안양시장"의 합의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다.
- 제13조(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) 본 협약의 해석과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"사업시행자"와 "안양시장"이 협의하여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한다.
- 제14조(특약사항 및 효력) 쌍방은 협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,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.

붙 임: 건축물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

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직인 날인하여 "사업시행자"와 "안양시장" 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00년 00월 00일

(사업시행자) 건물명, 기관명 (OO 부서장) 관리책임자

주 소:

성 명: (인)

(보조금지원자) 안양시장 (인)

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21. 5. 13>

(3면 중 제1면)

	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										
①사업시행자 (관리책임자)		성명 (대표자)				생년월 (법인등록					
		7,	_				전화/포	택스			
		주소					핸드	폰			
1		개요							<u>'</u>		
	소유자주소						소유자성	명			
2	건물소재지						건물명	칭			
건 물 현	준공연도		년	층수	지하 지상	き き		조			
황	연면적		m²	건물 용도			건물 L 상주인-				
3 3	- 상유효면적					m²	④소요사약	目			천원
(5) X	- 업시행기간		.부	터		까지	⑥보조금길	결정액			천원
⑦옥	-상조경면적	옥상녹회	ት면 적	조경	시설	면적	인공지 조성토			기타	
			m²			m²		m³			
	「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 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										
	년 월 일										
	신청인 [관리책임자] (인)										
ę	난양시장 귀	ਨੋ}-									

(3면 중 제2면)

2. 옥상조	경 시	설 설치 현황	ŀ			
시설명	옥선	상조경 시설	규격	시설설치현학	시설설치현황	
	합계					
방수공사	옥선	상바닥 방수	공법 및 시공면적		m²	
배수공사	배 :	수 시설설치	면적 또는 길이			
옥상녹화		소 계				
	인공지	반(토양층) 설치	면적 및 토량	m², m³	ı	
		초 화 류	종류 및 본수			
		지피식물	종류 및 식재면적			
	식재	관 목	종류 및 본수			
	17.11	교 목	본수 및 규격			
			(근원직경 등)			
		기 타				
조경시설	;	소 계				
	<u>য</u>	가 고 라	개소, 면적		m²	
	번	<u></u> 치				
	7	형자(亭子)	개소, 면적		m²	
	ૄૼ	· 경조형물	종류 및 규격			
	보	. 행 통 로	면적		m²	
	そ	성 원 석	면적		m²	
	분수	··연못·수로	면적		m²	
	Ē	등 수경시설	[전역 		m²	
) II				
기타 시설		소 계				

3. 옥상녹화사업 전경 사	진
	옥상녹화 공사 전경 사진
	1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
수 -	상녹화사업 완료 후 전경 사진